

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1. 7. 16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안산시 수입증지중 300원권, 600원권의 증지가 필요하였던 것을 내부부령 제522호 ('91. 2. 1) 에 의한 수수료율의 조정으로 400원권, 700원권의 증지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음.

2. 주요골자

- 안산시 수입증지조례 제6조 제1항에 400원권 및 700원권 수입증지와 기존 자치법규에 누락된 60원권 및 2,000원권 수입증지를 삽입
- 별지서식 (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) 중 위 4개종 수입증지안을 신설

안산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 (안)

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(증지의 종류, 규격 및 모양) 제1항중 "50원권" 다음에 "60원권"을
"300원권" 다음에 "400원권"을 "500원권" 다음에 "700원권"을 "1,000원권"
다음에 "2,000원"을 각각 삽입한다.

제17조 (증취급 및 매수) 제1항중 "별지 제3호서식" 및 동조 제2항중 "별지
제4호서식"을 별첨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중 "제3항"을 "제2항으로, "증지"
를 "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입증지 수령증"으로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
별첨과 같이 한다.

제28조 (장부비치 및 검사) 제1항중 "별지 제6호 서식"을 별첨과 같이 한다.

제29조 (출납정리)중 "별지 제5호 서식"을 별첨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